

---

# WTO 다자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1. 머리말
2. WTO 체제 개편 논의
3. 한국 농업에 주는 함의



## WTO 다자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 1. 머리말

- **WTO** 다자통상체제의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EU는 지난 9월 새로운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WTO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TO 체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WTO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뒤이어 캐나다도 WTO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현실을 반영한 WTO 규범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WTO체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10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을 초청하여 WTO 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sup>1)</sup>
- 이러한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동시에 그 동안 **DDA**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이 품어 온 불만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의 WTO 체제 개편안은 공통적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통보(notification)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지급과 국영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기초 정보수집의 성격이 강하다.
  - 특히 EU 제안은 광범위한 다수의 개도 회원국이 WTO의 무역협상 기능을 저하시켰으며, 특히 전체 WTO 회원국 2/3에 달하는 국가에게 개도국 우대(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허용하는 현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이에 캐나다가 주관한 지난 10월의 WTO 체제 개편 논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WTO 체제 개편 의도를 의심하면서 DDA 재개 중요성을 강조해 WTO 체제 개편을 놓고 선진국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입장을 취하였다.

1)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WTO 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 당사국으로 캐나다는 이를 감안, 초기 논의에서 양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자 두 국가를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과 중국의 참여 없이는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 4 격변하는 세계 통상질서: 농업에의 영향과 대응

- 이러한 **WTO** 체제 개편 논의는 우리나라의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운영,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 그리고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이 투명하게 WTO에 통보된다면 보조금 재분류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금지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에 포함될 보조금이 확대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R&D** 보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보조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치가능보조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조금 분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정책 수행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 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영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공기업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제제를 받을 수 있다.
-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개도국 졸업제 또는 경제발전에 상응한 의무이행 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의 주시해야 한다.
  -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관세 감축률이나 보조 감축에 있어 큰 차이가 남은 물론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품목이나 특별 세이프가드의 활용도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 2. WTO 체제 개편 논의

### 1) EU의 WTO 체제 개혁안

#### □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통보 개선

- EU는 WTO 회원국이 운용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부족이 현재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WTO 위원회의 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당사국의 통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통보를 지연한 경우 당사국의 WTO상 권리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예: WTO내 각종 기구의 의장 취임 제한 등).

- 특히 당사국이 통보 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원국이 이를 대신 통보할 수 있는 역통보(Counter-notification)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역통보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도 제안하였다.
- 눈여겨 볼 대목은 **미 통보 보조금이나 다른 회원국이 역통보한 보조금은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통보하지 않은 보조금이나 다른 회원국에 의해 발견된 보조금은 모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미이다.
- 아울러 현행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의 기능을 강화해, TPRM이 회원국의 통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TPRM의 효율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 □ 보조금 및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EU는 정부가 국영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현행 WTO의 상계관세조항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으나 국영기업이 자체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현행 상계관세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을 제안하였다.
  - 국가소유 기업 또는 국가가 조정하는 기업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정부 정책을 수행할 경우 현행 상계관세 규정상의 '공공 기구(public body)'에 포함시켜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특히 국영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성과 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받는 혜택이나 지원도 시장왜곡보조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보조금과 관련해서 EU는 **금지보조금의 대상 확대**와 같은 규제강화를 제안하였다.
  - 조치가능보조금은 그것이 자국의 무역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WTO체제에서 지금까지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해 왔다.
  - 그러나 조치가능 보조금이라고 해도 **과잉 생산을 유발시켜 국제 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보조금은 규제**되어야 하며, 이의 예로 무제한 보증이나 신뢰할만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파산 또는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들었다.
  -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도 여기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 강요된 기술이전을 포함한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내 규제 완화

- EU는 현행 WTO의 서비스나 투자 규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조치와 시장왜곡 조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규범 도입을 제안하였다.

## 6 격변하는 세계 통상질서: 농업에의 영향과 대응

- EU는 강제기술이전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규정에 근거한 행정적 검토 및 허가절차, 광범위한 재량권 허용, 허가제한 등과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조치를 다루기 위한 WTO 규범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 개도국 우대 개선

- EU는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예로 제시하며 WTO의 현행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은 의미가 없어 새로운 규범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EU는 개도국 졸업제를 제시하면서 개도국 스스로 개도국을 졸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도국을 졸업하되 유예기간 중 특정분야에 한해서 개도국 우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향후 개도국 우대조치는 그 필요성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a need-driven and evidence-based approach) 특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도국 우대는 사안별(case by case)로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 □ 협상 방식: 필요시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을 허용

- EU는 다자협상을 통해 성과 도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자협상 방식을 지지하지만 다자협상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를 고집하기 보다는 복수국간협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다자협상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복수국 협상을 추진하되 다른 회원국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그 협상결과가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제안하였다.

###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sup>2)</sup>

- EU는 분쟁해결 상소기구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쟁해결양해(DSU)의 포괄적 개정을 제안하였다.
- 미국이 요청대로 당사국이 달릴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소기구 판결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소기구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제안하였다.

2) WTO 분쟁해결제도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심인 상소기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 이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을 뽑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소기구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심리 개시를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을 필요로 한다. 상소기구 위원 임기는 3년인데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에 공석이 발생해도 이의 충원에 반대해 2018년 10월 현재 3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아 있다. 이들 중 1명의 임기가 2019년 말이어서 그 이전에 위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9년부터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법기능이 마비된다. 이에 따라서 각국이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거부를 비난하고 있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초월한 월권행위를 해오고 있는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위원 임명을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해결책을 찾고자 미국의 불만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임기가 종료된 상소위원의 심리 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소위원의 임기 연장을 성문화하는 동시에 임기연장(6~8년) 및 단임제를 제시하였으며, 채택된 상소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의견 표명을 제안, 선례구속 적용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 □ 기타 : 디지털 경제상황을 반영할 신 무역규범

- 기타 EU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무역장벽을 없애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디지털무역에 대한 WTO 규범 제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2)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안

#### □ 국내 조치에 대한 통보 및 투명성 제고

- 캐나다는 통보 이후 그 내용을 다자차원에서 또는 사안별로 검증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먼저 WTO의 통보요건 자체를 다시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핵심요건만 남겨 두어 통보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통보를 위해 통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U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통보와 함께 다른 국가에 의한 역통보 제도를 제시하였다.
  - 한편 사무국으로 하여금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보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제시하였다.
  - 뿐만 아니라 통보결과의 평가를 위해 회원국간 또는 관심국의 심층토론 및 전문가 견해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정식 기구에서 이를 다루는 의무 및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캐나다의 제안은 EU 제안에 비해 통보 이후 그 내용을 검증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반면 EU처럼 보조금이나 국영기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국내 조치(domestic measures)라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예: 중국)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보인다.

#### □ 개도국 우대 개선

- 캐나다는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른 국가는 그 의무 이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는 기본 토대위에서 기존 무역원활화협정(TFA)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개도국 우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8 격변하는 세계 통상질서: 농업에의 영향과 대응

- 일단 개도국의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여 과도기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차별 없이 완전한 의무를 이행
- 국가별 의무의 차이, 이행기간의 차이 등이 증거에 의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됨.
- 캐나다의 개도국 우대 제안은 기본적으로 EU와 별 차이 없다. 과도기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인정하지만 이는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도국 우대는 사라지고 모든 회원국이 완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EU의 졸업제도와 유사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협상 방식: 복수국간 협상

-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WTO의 그 어떤 회원국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회원국이 더 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복수국간협상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보기술협정(ITA)과 같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면 그 혜택이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개된 형식의 복수국간협상
- 정부조달협정(GPA)과 같이 참여국에 한해 협정이 적용되는 비공개 복수국간협상
- 서비스 복수국간협상(TISA)과 같이 WTO 밖에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고 WTO의 분쟁해결기능 적용이 불확실한 협상

### □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혁

- 캐나다는 현행 분쟁해결제도가 새로운 무역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다음과 같이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캐나다는 재판 이후 상소를 자제하는 한편 소규모 분쟁해결을 위해 보다 간소화된 중재절차를 마련하고, 상소위원들이 특정 이슈의 심리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상소기구 존재의 일차 목적이 빠른 판결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직접 연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검토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캐나다는 이를 통해 상소위원들이 심리 부담을 덜고 규범에서 정한 90일 판결시한을 맞출 수 있어 분쟁해결의 신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기타 : 협상의 우선순위

- 캐나다는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안하였다.
- DDA를 포함하여 이전의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예를 들어 경사관세 및 관세정점, 국내농업보조, 최빈개도국 등)
- 최근의 국제무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WTO 규범의 현대화 분야(예를 들면 디지털 무역과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성, 중소기업, 투자, 국내 규제 등)
- 최근에 대두된 경쟁왜곡조치 (예를 들면 무역왜곡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교역비밀, 투명성 제고 등)

□ 전체적으로 캐나다 제안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등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함.

표 1. EU와 캐나다의 WTO 체제 개편에 대한 제안

주요 이슈	EU 제안	캐나다 제안
투명성 및 통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의무 미 준수시 WTO 권리 제한</li> <li>. 역통보 제도</li> <li>. 미 통보 보조금은 보복대상으로 간주</li> <li>. 무역정책검토제도(TPR)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 이후 체계적인 검증을 제안</li> <li>- 통보 인센티브 및 역통보</li> <li>- 사무국, 전문가 그룹의 평가 개입</li> <li>-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정례 기구에서 검토</li> <li>- 모니터링 개선</li> </ul>
국영무역 및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무역 규제 강화</li> <li>. 과잉유발 보조금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언급 없음 (협상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논의대상에는 포함)</li> </ul>
개도국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졸업제도 도입</li> <li>. 개도국우대는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 정도에 상응한 의무 이행</li> <li>- 의무 및 이행기간은 협상에서 결정</li> </ul>
분쟁해결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소기구 판결 90일 시한 엄수</li> <li>. 상소기구 위원 증원 및 임기 연장</li> <li>. 상소보고서에 대한 상소국 의견 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소기구에 대한 원칙적 제안</li> <li>- 상소 자제</li> <li>- 간소화된 중재 절차 마련</li> <li>- 직접 연계되지 않은 사안 검토 자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국간협상(Plilateral) 추진</li> <li>. 서비스 및 투자장벽 해소</li> <li>. 디지털 무역상황을 반영한 21세기 신 무역규범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국간협상방식의 3가지 유형 제시</li> <li>- ITA, GPA, TiSA 방식</li> <li>. 협상의 우선 순위 결정</li> </ul>

### 3) 주요국의 반응

- **현 WTO 상황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함.**
  - 대부분의 국가가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한 글로벌 무역의 변화, 디지털 무역의 확산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한 WTO 대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등 현 WTO 체제가 어떠한 조치 없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는 인식을 공유
  
-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견을 보임.**
  - 일본의 경우 WTO 개혁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모든 이슈를 하나로 묶어 논의하기 보다 이슈별로 분리하여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들의 토론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논의 진전의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
  - 칠레는 공식인 상소기구위원 임명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브라질은 선진국의 WTO체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보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반대함은 물론 역통보 도입도 신중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사무국에 의한 평가 등도 사무국의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통보 및 투명성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그 외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상소위원의 증원 등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이슈 논의 보다 기존 DD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호주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예로 WTO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해 투명성 및 통보 개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통보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 **전체적으로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 WTO 체제 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 10월 24~25일 오타와에서 관련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체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수준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상소위원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계속을 언급하고 있다.

- 특히 개도국이 주창하는 개발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도국우대를 포함하여 개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있다.

### 3. 한국 농업에 주는 함의

#### □ 농업보조정책의 엄격한 재분류와 시의적절한 통보가 요청될 것임.

- 투명성 제고 및 통보의 효율성 개선은 WTO 체제 개편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자 어떤 회원국도 거부하기 어려운 명제이다.
  - 통보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공정한 무역거래의 기본이자 무역정책검토의 골간이기 때문에 WTO 어떤 회원국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문제는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사용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산업보조금 분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농업보조금의 분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나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농업보조정책을 분류해, 이를 WTO에 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WTO 회원국들이 우리의 농업보조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에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현행 허용정책으로 분류된 농업보조금을 재검토해 향후 예상되는 무역정책검토에 대비해야 한다.
- 특히 지금과 같이 농업보조금 통보를 미룰 경우 앞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가 WTO 농업보조금을 통보한 마지막 시기는 2015년 1월로 2011년까지의 농업보조현황만을 통보하고 있다.
  - 선진국 대부분이 2013~14년까지 농업보조현황을 통보하고 있어 최소한 선진국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통보시한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예: 2018년 보조의 경우 2020년까지 2년 이내 통보)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 □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졸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선진국들이 중국의 개도국 우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 졸업제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세에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 12 격변하는 세계 통상질서: 농업에의 영향과 대응

-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우대 논의에서 항상 대표적인 국가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향후 개도국 우대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WTO의 약 100여개 국가가 모두 개도국으로 아들에게 모두 동일한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도국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 최빈개도국을 졸업한 아프리카의 국가와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대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세이다.
- 대만도 지난 9월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WTO의 미래 다자협상에서 개도국우대를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 결국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우대 활용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다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개도국 졸업제도를 우리 여건을 반영하여 만드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일정 기간 심사를 통해 개도국을 졸업하는 경우 즉각적인 선진국의 의무부담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 유예기간을 얻어 졸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 분야별 접근도 가능하다. 농업분야만을 개도국우대를 활용하고 다른 여타 분야에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는 분야별 접근도 EU의 제안에 언급되어 있다.
- 선진국에 의한 **WTO** 체제 개편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WTO**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진국들은 연합을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리그를 만들 수도 있음.
-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WTO 체제 개편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복수국간협상을 활용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도 있다.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Old QUAD가 WTO 체제 개혁을 이끌고 있으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상호 타협 없이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경우 미국-EU-일본-캐나다 등이 연합해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그들만의 무역연합을 만들 수 있다.
-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연합에 가입을 요구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